

서울지방법원

판결

2001. 6. 12. 판결선고	인
2001. 6. 12. 원본영수	

사 건 2000가소101328 부당이득금

원 고 한지양

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승수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진

피 고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

속초시 설악동 170

대표자 주지 법장(속명 이광하)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

담당변호사 배성진

변 론 종 결 2001. 4. 26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
청 구 취 지



피고는 원고에게 1,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의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는 그 법적 근거, 입법취지, 기본성격, 그 대가인 향유이익 등이 서로 상이한 점에서 그 통합 징수는 부당하고, 문화재관람료를 국립공원 입장료와 별도로 징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그 통합징수를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여진다.
2. 다만 문화재의 소유자·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(문화재보호법 제39조 제1항, 제58조 제2항),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람료 징수가 부당이득인지 여부는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통합 징수의 부당 여부에 관계 없이 위 관람료 징수가 그 자체적으로 문화재보호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.
3. 피고사찰 관련 문화재로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설악산 일대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비롯하여 강원도지정문화재로 신흥사극락보전, 신흥사경판, 신흥사보제루, 강원도문화재자료로 신흥사 일원, 신흥사부도군이 있는데, 피고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 173.7km² 중 관광객이 주로 찾는 외설악 쪽으로 38.6km²를 소유하고 있는 외에 나머지 문화재를 직접 소유 관리하고 있다.

한편 원고는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납부하고 매표소를 통과한 다음 소공원을 지나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권금성을 관광하였는데, 위 매표소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 중 피고 소유 토지부분 내로 1.4km² 진입한 곳으로 곧 신흥사 경내지로 이어지고

그 인근에는 강원도문화재자료인 신흥사부도군이 위치하고 있으며, 위 관광구간 전부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 중 피고의 소유부분 내에 속해 있다.

4. 문화재관람계약의 성립에 있어 그 관람의 의사는 외부적·객관적 관점에서 규범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, 위와 같이 원고가 국립공원입장료 및 문화재관람료를 납부하면 국립공원에 입장할 수 있는 기회 이외에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납부한 다음 실제로 피고 소유부분 내의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관광하였다면 외부적·객관적으로 그 관람의 의사가 추인되는 것이고, 원고가 위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이 국가지정문화재임을 몰랐다가 문화재를 관람하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다는 등의 사정은 위 추인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.

5. 그렇다면, 피고의 문화재관람료 징수가 부당이득임을 전제로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.

2001. 6. 12.

판사 이원형 _____